

협 정 서

대구대학교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학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류협정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이 협정은 대구대학교(이하 “갑” 이라 한다)과 경북지방경찰청(이하 “을” 이라 한다)간의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정사항) “갑” 과 “을” 의 협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을은 갑의 경찰행정학과 학생에게 실습장을 제공(학점인정) 한다.
2. 을의 경찰관이 갑의 학부, 대학원 과정에 입학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3. 경·학간 정기 또는 수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4. 갑은 을의 경찰관 직무교육을 지원한다.
5. 을의 경찰교관요원 및 실무전문가가 갑에 출강한다.
6. 경찰행정 및 경찰교육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한다.
7. 기타 상호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제 3 조(경·학 교류 협력위원회 구성) “갑” 과 “을” 간의 상호 협력 사항을 협의·실행하기 위하여 「경·학 교류 협력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양 기관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다.

2. 공동위원장은 “갑” 과 “을” 의 기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를 각 기관에서 1 인씩 추천한다.
3. 회의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소집하고 필요사항을 결정토록 한다.
4.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5. 경비는 양측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 4 조(사무처리) 협정에 필요한 제반 실무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 과 “을” 은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대구대학교 : 행정대학 행정담당
2. 경북지방경찰청 : 경무과 교육담당

제 5 조(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갑” 과 “을” 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제 6 조(협정서의 효력) 이 협정은 양 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양자간 협의에 의해 협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000 년 6 월 26 일

대구대학교 총장

경북지방경찰청장

윤 덕 홍

김 종


